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노혁준**

차 례

- I. 들어가면서
- II. 현행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및 현황
 - 1.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 2. 사적 연금의 현황
- III.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와 연계 필요성
 -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 필요성
- IV.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계를 위한 기존제도와 그 한계
 - 1. 서론: 퇴직연금 유형간, 개인연금 유형간의 전환 내지 연계
 -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연계제도
- V. 해외 사례
 - 1. 호주
 - 2. 미국
- VI. 제도적 대안
 - 1. 기금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
 - 2. 통합연금계좌의 가능성
- VII. 결론

* 이 논문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의 연구프로젝트로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제출된 “자산관리 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융법제 개선방안”(2016. 12.) 중 필자가 담당하였던 제3장을 수정, 보완하고 위 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본 호에 공간하게 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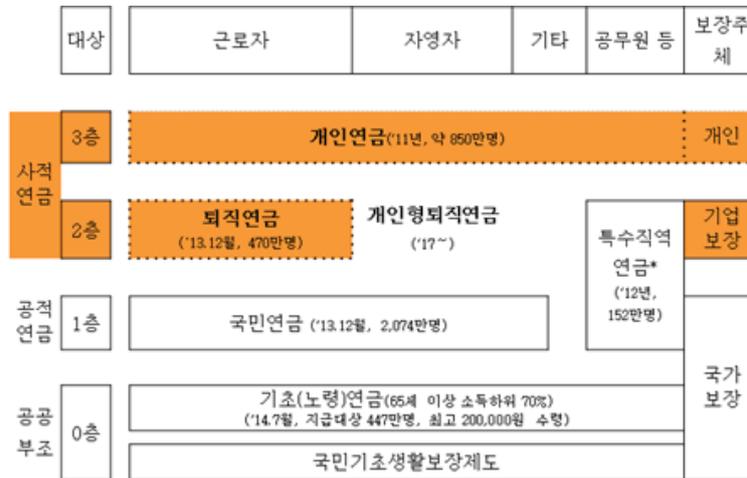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접수일자 : 2017. 4. 30. / 심사일자 : 2017. 5. 29. / 게재확정일자 : 2017. 5. 31.

I. 들어가면서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체제는 공공부조 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3층 구조에 의한다(표 1 참조).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인 공무원, 교원 등을 제외한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연금제도의 기저를 이룬다. 그 위에 설계된 것이 이른바 사적연금으로서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다. 공적연금은 연금제도의 밑바탕을 이룰 뿐, 실제 품위 있는 노후의 보장은 사적연금의 효율적 운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이 시스템상 최적구조에 의하고 있는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특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외부에서의 모니터링의 용이성 관점에서 볼 때 유사 성격의 사적 연금은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사적 연금 내부의 연계 측면에서 현재의 시스템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글은 대표적인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적연금제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1] 우리나라의 다층노후보장 시스템1)



1) 강동수 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연 구용역보고서, 2014, 3쪽.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현행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살펴본다(제II장).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면서 그 연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제III장). 기존 연금제도도 이와 같은 연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정 범위에서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어지는 장에서는 기존 연계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제IV장). 나아가 해외의 사적연금 내부에서의 연계방식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탐구해 본다(제V장). 마지막으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VI장), 글을 마무리한다(제VII장).

II. 현행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및 현황

1.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1)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기업의 일시금 지급부담 해소를 위해 2005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 근거한 것이다. 노후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일시금인 퇴직금보다 지속적 수급이 가능한 퇴직연금이 우월하므로, 퇴직급여체제를 연금제도로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²⁾

근퇴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이하 “DB”)이다(근퇴법 제2조 제8호).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시에는 일정금액,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원을³⁾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으로 지급한다. DB는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2) 2012년 근퇴법 개정안 참조. 관련된 연구보고서로서는 박근후 외, 퇴직연금 단일화 법률적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4 등 참조.

3) 즉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⁴⁾

둘째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이다(근퇴법 제2조 제9호). 사용자는 노사가 합의한 사용자 부담 기여금⁵⁾을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이를 자기 책임 하에 운용한다. DC는 기본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또한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볼 때 파산위험,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DC가 유리할 수 있다. 기준책임준비금⁷⁾ 전액을 사외에 적립하지는 않는 DB와⁸⁾ 달리, DC인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 전액을 근로자의 퇴직급여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근로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이다(근퇴법 제2조 제10호). IRP는 앞서의 DB, DC와는 다른 차원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DB, DC가 퇴직급여의 적립, 운용 주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구분이라면, IRP는 본디 근로자 이직시 퇴직연금 통산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에 의한 추가출연을⁹⁾ 용이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 제도이다¹⁰⁾. 근로자

4)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주요특징, 2쪽(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6)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주요특징, 3쪽(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7) 근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한다: (i)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ii) 근로자와 근로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

8) 근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는 기준책임준비금의 80%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9) 다만 원래 DC형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추가출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퇴법 제20조 제2항.

10) 2012. 7. 근퇴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가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여야 하고,¹¹⁾ 근로자는 IRP 계좌에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다.¹²⁾ IRP는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원금과 누적수익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DC형과 유사한 점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를 DC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³⁾ IRP는 전형적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⁴⁾

[표 2] 퇴직연금의 유형¹⁵⁾

구분	DB형	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기업형IRP ¹⁶⁾	개인형IRP
급여수령 형태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	연금	55세 이상/퇴직IRP 이전 후 수령		55세 이상
요건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급여수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	퇴직급여이전 금액 ± 운용손익	
운용주체	기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추가입금 여부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중도인출 여부	불가능 * 단 제한조건(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 충족시 수급권 담보대출 가능	제한조건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제한조건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제한조건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 11)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퇴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12) 추가적립된 부분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12%) 가능하다. 이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400만원)과 합산된다.
- 13) 현대경제연구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성장 전망과 영향”, 「연금시장 리뷰」 제68호, 2012. 9. 14, 13쪽.
- 14) 현대경제연구원, 위의 글, 14쪽.
- 15)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주요특징, 11면(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연금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은 가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설정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과 구분된다. 즉 근퇴법에 의해 강제되는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다만 세법상 특례에 따라 유인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협회의 개인연금은 이른바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가리킨다(이하 “연금저축”이라 하면 특별한 연금이 없는 한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지칭함). 이는 정부가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994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에 의해 개인연금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에서 비롯하였다.¹⁷⁾ 해당 조항은 2000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¹⁸⁾ 2013년 소득세법으로¹⁹⁾

-
- 16) 이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 IRP를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금감원, 위의 글, 3쪽.
 - 17) 당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80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고 하였다. 입법이유에 따르면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조세감면규제법을 대체하여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86조로 승계되었다.
 - 18) 당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2000.12.29. 일부개정) 제86조의2는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였다. 위 연금저축은 종래의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은 확장되었으나(즉 개인연금저축인 경우 연간 저축금액의 40%,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되었지만, 연금저축은 연간 저축금액의 100%,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었다), 수령시의 세제혜택은 축소되었다(즉 개인연금저축인 경우 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 19) 당시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제51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일부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연금계좌”로 정의하면서 연금계좌에 대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연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보험료 공제의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인정하였다. 납입한도액이 종래의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 것(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이외에, 소득공제의 범위에서는 종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순차로 이관되었다. 2014. 1. 1. 개정 소득세법²⁰⁾ 이후에는, 연금저축에 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래의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 방식의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²¹⁾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운용형태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²²⁾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위 신탁, 펀드²³⁾ 및 보험 사이에서는 과세상 특례지위를 유지하면서 상호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가 인정된다.²⁴⁾

86조의2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 법률 제12169호, 2014.1.1. 일부개정.

21)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2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치인 84만원(700만원 x 12%)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2) 소득세법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저축계좌로서 다음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ii)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iii)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3) 다만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의 단위가 종전 펀드(상품)에서 연금저축계좌로 변동하였다. 이석호/임형준,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금융위 용역보고서), 2013, 52쪽.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참조. 이 조문에서는 “계좌의 이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기존의 연금저축 계약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계좌 이체로 보기는 어렵고, 판례상 ‘계약인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행하는 채권, 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또는 금융규제법상의 ‘계약이전’(보험업법 제140조 제1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령상의 용어인 계약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3]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유형²⁵⁾

구분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		
	채권형	안정형	생보사	손보사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투자 대상	채권 및 유동자산에 100% 투자	주식에 10% 미만, 채권 및 유동자산에 90% 이상 투자	금리연동형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적용)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채권 투자, 주식에는 투자 불가	주식형 또는 채권형에 속하지 않는 상품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주식 투자

광의의 개인연금에는 세제적격 연금저축 이외에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하 “연금보험이라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지칭함. 연금저축의 한 유형인 ‘연금저축보험’과는 구분됨)도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세액공제는 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만 보험차익²⁶⁾에 대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²⁷⁾ 연금보험은 오로지 생명보험사만이 판매하고 있다.²⁸⁾

2. 사적 연금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체계 중 가장 큰 규모는 역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으로서 전체 적립금 중 60% 내외를 차지한다. 사적 연금으로 국

25) 이석호, 임형준, 앞의 글, 58쪽.

26)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보험차익은 총 지급액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7)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비과세요건이 적용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즉 ①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 ③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연금보험.

28) 구체적인 비교에 관하여는 이준행,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 5. 30, 25쪽 참조. (http://www.sirfe.com/index.php?mid=PolicyConferen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7%B0%EA%B8%88&document_srl=2860에서 다운로드 가능)

한해 볼 때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중 연금보험의 비중이 20% 내외로서 가장 높다. 나머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각기 10%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5] 연금적립금의 규모 (2012년 말 기준, 단위: 조원, %)²⁹)

구 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		총계
				연금저축	연금보험	
적립금(조원)	392.0	69.2	216.0	78.8	137.2	677.2
비중(%)	57.9	10.2	31.9	11.6	20.3	100.0

노후에 대비하여 사적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률은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정부가 사적 연금의 가입 및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유이다.

[표 6] 주요국의 사적연금 가입률 비교 (2011년 기준, 단위: %)³⁰)

	영국	미국	독일	한국³¹)
퇴직연금	49.1	32.8	32.2	18.8
개인연금	18.1	24.7	29.9	12.2

구체적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의 경우 2016년 3월 적립분을 기준으로 DB형이 67.1%, DC형이 23.4%, IRP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15개사, 생명보험 14개사, 손해보험 7개사, 증권사 15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52개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있는바, 각기 52.1, 23.7%, 6.9%, 16.8%, 0.5% 수준의 적립금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³²) 운용방법의 관점에서 볼 때 원리

29) 강동수 외, 앞의 글, 74쪽.

30) 강동수 외, 앞의 글, 75쪽.

31) 실제 퇴직연금 가입율은 경찰인구대비 약 17.5%, 개인연금 가입율은 20~60세 인구의 약 30%로 OECD 결과(15~64세기준)와 다소 차이가 있음. 강동수 외, 앞의 글, 75쪽.

금보장상품이 92.6%인 반면 실적배당상품은 6%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³³⁾

[표 7]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2016. 3. 기준, 단위: 조원, %)³⁴⁾

	DB	DC	IRP	합계
적립금액(조원)	84.81	29.55	12.12	126.48
비중(%)	67.1%	23.4%	9.5%	100%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 생명보험사의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아서 55% 내외를 점하고 있다. 그 뒤를 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가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연금 중 연금보험이 연금저축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연금저축 권역별 비중추이 (단위: %)³⁵⁾

구분	은행	생보	손보	증권
2010. 12	20.6	54.3	18.7	6.5
2011. 12	18.8	54.0	20.9	6.3
2012. 12	16.0	56.1	21.6	6.3

32) 강동수 외, 앞의 글, 11쪽. 다만 이 통계는 2014년 6월말 기준이다.

33) 강동수 외, 앞의 글, 11쪽. 실적배당상품은 DC의 경우 19.4%(DB는 2% 미만), 증권사의 경우 14.5%(은행 등 다른 권역의 경우 2.0% 내지 4.5%)의 경우 다른 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34)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금감원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 자료.

35) 이석호, 임형준, 앞의 글, 62쪽.

Ⅲ.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와 연계 필요성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기 다른 법제에 근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생활재원을 사용자의 재원에 의해 충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율에는 규제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개인연금은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설계를 세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율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듯 상이한 접근법으로 인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법리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가입 및 추가납입 측면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이 모든 기업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³⁶⁾ 기업들은 일시금인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택일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퇴직연금의 도입이 부진한 형편이다.³⁷⁾ 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할 수 있는가? DB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반면, DC, IRP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연금은 그것이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설정여부 및 추가납입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른다. 다만 세제상 혜택을 판단할 때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산하므로(연 700만원의 범위³⁸⁾), 실제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의 추가납입은 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적립금 운용의 측면이다.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26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8조 이하가 적용된다. ① 먼저 투자한도를 살펴본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은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DB과 DC, IRP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DB인 경우 사용자별 적립금의 10% 이내

36) 즉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족하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다만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37)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2%에 불과하다. 강동수 외, 앞의 글, 13쪽.

38) 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2.

에서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³⁹⁾ 또한 사용자별 적립금의 15% 이내에서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⁴⁰⁾ 반면 DC, IRP인 경우 (사용자별이 아니라) ‘가입자별’ 적립금의 30% 이내에서만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⁴¹⁾ 40% 이내에서만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⁴²⁾ 한편 DB인 경우 사용자가 DB 적립금을 활용하여 지배력 확장이나서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적 제한을 두고 있다. (a) DB 적립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법인의 지분증권은 10%를 그 한도로 한다.⁴³⁾ (b) 사용자와 계열회사 관계 등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5%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⁴⁴⁾ 그 투자대상이 지분증권인 경우 발행 지분증권의 5%를 넘을 수 없다.⁴⁵⁾ ② 다음으로 투자대상의 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퇴직연금감독규정은 DC, IRP의 경우 개인의 개별 판단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투자대상을 엄격히 규제한다. 즉 DC, IRP의 경우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⁴⁶⁾ ③ 마지막으로 자사상품의 편입여부이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경영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를 금지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퇴직연금에 한해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교차거래를 허용하고 있다.⁴⁷⁾ 이에 따라 은행권이 운용하는 신탁상품에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상품 편

39)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

40)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2호.

41)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제2호.

42)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3항 제2호의2

43)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문.

44) DC, IRP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계열회사 관계 등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는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10%라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지배력 확장이 아니라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사용자와 계열회사간의 특수관계 고려).

45)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3호.

46)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47) 강동수 외, 앞의 글, 64쪽 이하

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개인연금인 경우 연금저축, 연금보험상품의 내용인 신탁, 펀드,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이외에 특별한 추가적인 운용 규제가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수급권 보장의 측면이다. 퇴직연금 중 DB는 기준책임준비금 전액을 사외에 적립하지는 않으므로⁴⁸⁾ 만약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⁴⁹⁾ 정부도 최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DB의 사외적립 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제시한바 있다.⁵⁰⁾ DC, IRP의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금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DB에 비해 안정적이다. DC, IRP 적립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의 대비책으로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 즉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은 그 본질상 일반 금융상품과 다르고 다액인 점을 지적하는 비판이 많았고,⁵¹⁾ 정부도 DC, IRP의 보호한도를 높일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⁵²⁾ 개인연금의 경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의 경우는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된다.⁵³⁾ 다만 위 DC, IR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금융상품과 통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의 대상이 된다. 수급권 보장에 관련된 문제로서 압류, 집행에 있어서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연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나 퇴직연금은 본래 압류금지자산이기 때문에⁵⁴⁾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⁵⁵⁾

48) 근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는 기준책임준비금의 80%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9) 위 사외적립 의무분에 대하여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동수 외, 앞의 글, 88쪽은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 명단공표 등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0) 이재우, 퇴직연금 시장 전망 - 누가 웃는가, 한국신용평가 Special Report 2015. 2, 13쪽 참조. (<https://www.kisrating.com/research/specialreport.asp>에서 다운로드 가능).

51) 강동수 외, 앞의 글, 83쪽, 이재우 앞의 글, 56쪽.

52) 이재우, 앞의 글, 13쪽 등.

53) 연금저축펀드인 경우 펀드의 내용에 따라 보호여부가 달라진다(www.kdic.or.kr 참조).

54) 근퇴법 제7조 제1항(“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에 취지에 비추어볼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퇴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근거 법령도 차이가 있고 그 운용규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간극이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강한 개인연금을 퇴직연금보다 선호하게 되는바,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연금보다 퇴직연금에 더 유리한 지원 및 세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⁵⁶⁾ 그러나 이렇듯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인가? 관점을 바꾸어 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으로서 노후 생활보장 자금을 미리 마련한다는 차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능한 한 동일선상에서 다룸으로써 함께 그 목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연계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개념상의 구분은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연계의 형태로는 후술하듯이 정보의 통합조회, 통합운용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연계의 필요성을 각 관련 주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목돈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수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각 연금 및 그 세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노후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합하여 운용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감독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 중 IRP는 2017. 7. 26.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설정할 수 있는바,⁵⁷⁾ 이렇듯 DB, DC 등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의사에 따라 IRP만 가입한 경우 이러한 IRP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연성은 낮아지게 된다.

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55) 금융위는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퇴직-개인연금 환승시작: 53만 계좌 14조 원의 대이동, 2016. 6. 1. 26쪽.

56) 강동수 외, 앞의 글, 35쪽.

57) 근퇴법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6조.

다만 퇴직연금의 내부 및 개인연금의 내부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퇴직연금 중 DC, IRP와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모두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DB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운용주체라는 점에서, 연금보험은 다른 세법체제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 이하의 연계논의도 주로 위 DC, IRP와 연금저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V.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계를 위한 기존제도와 그 한계

1. 서론: 퇴직연금 유형간, 개인연금 유형간의 전환 내지 연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의 연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퇴직연금의 각 유형간 및 개인연금 각 유형 사이에서 연계를 위한 기존 제도를 검토해 본다. 먼저 퇴직연금의 경우 DB, DC, IRP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한 근로자가 DB와 DC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근퇴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즉 근퇴법 제6조는 사용자가 DB, DC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였을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동시가입(예컨대 DB 80%, DC 20%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⁵⁸⁾ 또한 근로자가 DB 또는 DC와 함께 IRP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근퇴법 제24조 제2항은 IRP 설정이 가능한 자로서 DB 또는 DC 가입자를 명시하고 있다.⁵⁹⁾

58) 이 때 (i) DB의 급여는 근퇴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에 DB퇴직연금규약이 정하는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고, (ii) DC의 부담금은 근퇴법 제20조 제1항의 부담금에 DC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i), (ii)의 각 설정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퇴법 제6조 제1, 2항.

59) 근로자가 세액공제 등 목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DB 가입자라면 개인적인 추가납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IRP를 설정해야 한다. 반면 DC의 경우 IRP를 신설하는 대신 DC에 추가납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다만

문제는 어느 한 유형에서 운용되던 적립금을 세제 혜택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DB와 DC사이의 상호 전환은 회사가 DB, DC를 모두 도입한 상태이고 노사간 전환에 관해 합의가 되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DB에서 DC로의 전환은 실제로도 종종 이루어진다. 전환시점의 DB퇴직급여 총액을 산정하여 DC계좌에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형태이다. 임금피크제나 정년이 가까워져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근로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다.⁶⁰⁾ 반면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실제 예를 찾기 어렵다. DB는 지급할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 DC는 운용성과에 연동되는바, 전환 시점에 DB로 적립해야 할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전환이 쉽지 않다. 대안으로서 전환전 기간에는 DC를 유지하고 전환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DB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큰 실익이 없어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⁶¹⁾ DB, DC와 IRP와의 상호전환은 어떠한가? 원래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DB이든 DC이든 IRP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⁶²⁾ 퇴직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환이 이루어진다. 퇴직이전에 DB, DC를 IRP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IRP의 원칙적인 자격요건 자체가 DB 또는 DC가입자이기 때문이다(근퇴법 제24조 제2항 제2호). 한편 퇴직 전에 IRP 적립금을 DB 또는 DC로 이전하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IRP를 DB로 전환하는 것은 DC를 DB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IRP를 DC로 전환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

다음으로 개인연금 내부에서의 연계를 살펴본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금저축에서 연금보험으로 또는 그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막혀 있다. 각기 다른 세제상 특례요건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을 다른 하나로 바꾸는 순간 기존 계약을 해지한 것이 되어 세제

일부 금융회사는 기업 부담금과 개인 추가부담금의 구분 처리가 어려움으로 DC계좌에 추가납입이 어려운데, 이 때에는 별도의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감원, 세제혜택을 위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 방법 안내, 2쪽(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60)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주요특징, 6쪽(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61) 금감원, 위의 글, 6쪽

62) 근퇴법 제17조 제4항 참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연금저축 내부에서 또는 연금보험 내부에서 과세특례를 유지하면서 전환하는 것은 개념상 불가능하지 않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 일찍이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⁶³⁾ 제86조의2 제8항이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환을 허용할 근거를 마련하였고,⁶⁴⁾ 이러한 법리는 현행 소득세법 제40조의4에도 이어지고 있다.⁶⁵⁾ 이에 따라 2001. 3. 2.부터 연금저축 내에서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이 허용되고 있다.⁶⁶⁾ 이에 의하면 어떠한 개인연금 상품의 해약환급금에서 계약이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계약이전될 수 있다. 다만 종래의 개인연금저축(1994. 6.- 2000. 12)과 2000년 1월 도입된 연금저축 사이에는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⁶⁷⁾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가 차감되는 등⁶⁸⁾ 난점이 있어서⁶⁹⁾ 다른 연금상품에 비해 계약이전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종래 계약이전 절차는 먼저 새로 가입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한 다음 종래의 이전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번거로웠다. 정부는 2015. 4. 27. 신규 가입 금융기관을 한번만 방문하여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⁷⁰⁾ 실제로 개인연금 내부에서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사이의 계약이

63) 법률 제6297호, 2000.12.29. 일부개정.

64) 같은 법 제86조 제2항도 구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마찬가지 취지이다.

65) 제40조의4 제1항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66) 금감원, 2001. 2. 26.자 보도자료,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실시, 1쪽.

67) 금감원, 위 보도자료, 4쪽.

68) 금감원, 연금저축 납입시 꼭 알아야 할 6가지(2014. 11. 기준), 3면(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따르면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해 연금저축보험은 최소한 7년 이상 유지한 다음에 다른 상품으로 전환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69)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인 경우 실효된 계약이 정상화된 후에야 계약이전이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으나, 2014. 4. 1.부터는 미납보험료의 납입 없이도 계약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감원, 2014. 2. 16.자 보도자료,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70) 금융위/금감원, 2015. 4. 21. 보도자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1쪽.

전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9] 금융기관간 연금저축 계약이전 현황⁷¹⁾

(단위 : 건, %)

구분	'13년 상반기		'14년 상반기		증감 (B-A)	증감률 (B-A)/A
	건수주)(A)	구성비	건수주)(B)	구성비		
은행 (연금저축신탁)	380	7.8	899	10.4	519	136.6
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1,609	33.0	3,319	38.4	1,710	106.3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	1,902	39.1	3,261	37.7	1,359	71.5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	978	20.1	1,171	13.5	193	19.7
합계	4,869	100.0	8,650	100.0	3,781	77.7

나아가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2016. 5. 발표하고 2016. 11. 8.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23호)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저축을 아우르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⁷²⁾ 이에 따르면 개인연금계좌는 다양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연금수령액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가상관리계좌이다. 실제 연금자산은 보험, 신탁, 펀드, 일임⁷³⁾ 등 개별적 연금상품을 통해 관리된다.⁷⁴⁾ 다만 시스템 전환시의 혼란을 감안하여 1인 1계좌가 아니라 1사 1계좌(즉 1인이 금융기관별로 하나씩의 개인연금계좌 보유)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그가 가입한 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

71) 금융위/금감원, 위 보도자료, 7쪽. 통계에서 계약이전 건수는 회사별 전출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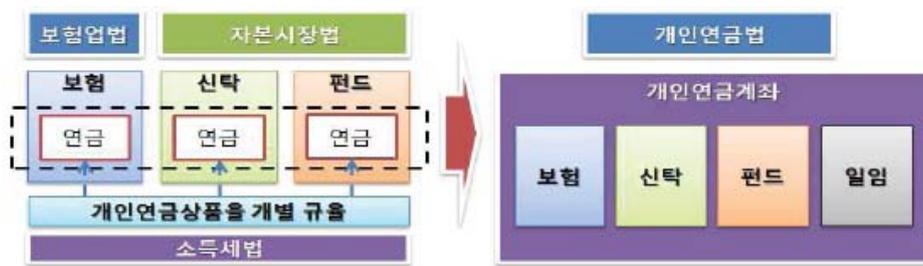
72) 금융위, 2016. 5. 31.자 보도자료,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개인연금법 입법예고안 제2조, 제4-8조.

73) 개인연금법 제정안 제2조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보험, 신탁, 펀드의 연금상품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투자일임형을 추가하고 있다.

74) 금융위, 위 보도자료, 2쪽.

등)의 개별 금융상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감독의 차원에서도 개별 금융업법상 금융상품규제를 떠나 단일한 개인연금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 개인연금법 제정방안⁷⁵⁾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연계제도

(1) 문제의 소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연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우리의 현행 법제는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일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중 비교적 성격이 유사한 것들(예컨대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하는 IRP와 연금저축)을 통합 운용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예 제도 자체를 통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 운용만을 허용하는 것은 각 제도 고유의 설정 목적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앞서 퇴직연금 내부간 또는 개인연금 내부간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계약이전을 통하여 상호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환 전후로 종래의 규제 및 세제혜택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가장 적

75) 금융위, 위 보도자료, 2쪽.

절한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퇴직연금 중 IRP와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이전은 2016. 2. 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⁷⁶⁾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종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변경하는 계약이전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이체와 달리 해지 및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IRP 계좌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통상적인 인출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개인연금계좌에서 IRP 계좌 입금을 위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계좌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었다.⁷⁷⁾ 위 개정 소득세법은 이러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엄격한 구분을 IRP와 연금저축 사이에 한하여 완화하였다. 이하에서는 개정법 하에서의 계약이전의 요건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개정 소득세법 하에서의 IRP와 연금저축의 연계

201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이전은 IRP와 연금저축 사이에만 인정된다. DB, DC 등 다른 유형의 퇴직연금, 연금저축 중 연금보험인 경우 여전히 계약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IRP와 연금저축의 상호 계약이전은 다음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고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연금저축의 형태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어느 것인지는 상관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기존 연금의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만 계약이전이 가능하고 일부 이체는 허용되지 않는다.⁷⁸⁾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이체받을 금융기관(신규 가입 회사) 및 기존

76)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 2. 17,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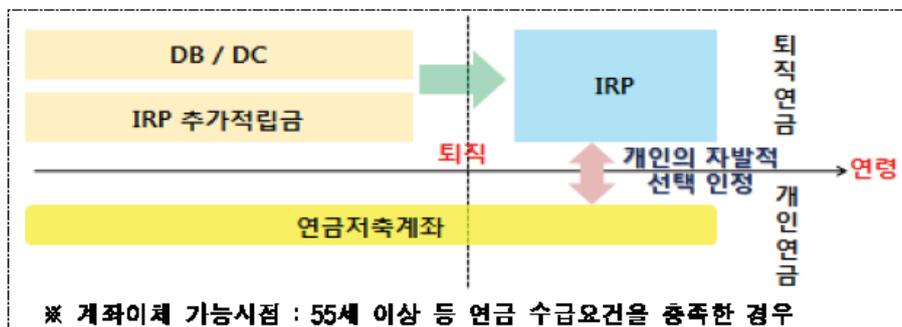
77) 금융위 2016. 7. 13.자 보도자료,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등이 면제됩니다

(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272에서 다운로드 가능)

78)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의 금융기관(기존 가입 회사)를 모두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 내부의 계약이전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One-stop 서비스가 곧 실현될 예정이다.⁷⁹⁾ 개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이전 제도를 도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간의 계약이전



(3) 현행 제도의 평가와 그 한계

IRP와 연금저축간의 계약이전을 허용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래의 엄격한 구분을 탈피한 전향적인 입법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IRP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은 빈번한 반면 반대방향으로서 계약이전을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⁸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자산운용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수익률 측면에서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9) 금융위, 2016. 7. 13.자 보도자료,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 소득세등이 면제됩니다, 4쪽.

80) 서울경제신문, “내 노후를 부탁해” … IRP~개인연금 ‘11조 대이동’ 스타트, A21쪽.

도 단기운용에 가까운 IRP보다 장기운용되는 연금저축이 더 높은 편이다.⁸¹⁾

그렇다면 위 계약이전 제도의 도입으로 사적연금의 효율적 운용은 완성된 것인가? 위 개정은 연계가 필요한 사항 중의 일부만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퇴직 또는 55세에 달하기 이전에는 계약이전이 불가능하다. 적어도 DC 또는 IRP 추가적립금과 연금저축의 투자 성격은 매우 유사함에도 상호 이전에 동일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 것은 난점이 있다. 전액에 관하여만 계약이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가입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DC, IRP와 연금저축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위 개정법은 이러한 목표로의 일보 전진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V. 해외 사례

사적 연금제도는 각 나라 고유의 사정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되고, 그 내부에서도 각기 DC, DB, IRP 또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으로 나뉘지만 이러한 구분이 해외에 그대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구분이 해외에서는 혼하지 않다. 다만 외국에서도 직장에서의 보수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와 개인적 선택에 따른 연금제도가 중층적 노후보장 제도를 구성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된다. 따라서 이렇듯 중층의 제도들 간에 어떠한 연계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적 연금제도의 성공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호주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1) 머니투데이, 퇴직-개인연금 환승시작: 53만 계좌 14조원의 대이동, 2016. 6. 1. 26쪽. 계약이전과 무관하게 연금저축펀드에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펀드비교 사이트인 제로인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2016. 7. 12.까지 640개의 연금저축펀드(상장지수펀드 제외, MMF 포함)에 5,584억원이 순유입됨으로써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2조 5,300억원이 빠져나간 것과 대비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내 노후를 부탁해” ... IRP~개인연금 ‘11조 대이동’ 스타트, A21쪽.

1. 호주

호주의 사적 연금제도는 슈퍼에누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에 의해 대표된다. 호주의 노후소득 보장체제는 공적부조인 노령연금(Age Pension, 1층), 강제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슈퍼에누에이션 보증(Superannuation Guarantee, 2층), 개인연금(Voluntary Saving,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는 위 2층의 슈퍼에누에이션 보증이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장치로 기능한다.

호주의 현행 슈퍼에누에이션 보증은 종래 각 직역에서 다양하게 자생적으로 발전하였던 기금을 1992년 통합한 것이다. 슈퍼에누에이션 기금(superannuation fund)이 신중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APRA(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 의하면, 슈퍼에누에이션 기금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⁸²⁾ ① 공적기금(public sector fund)은 주로 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금이다. ② 산업기금(industry fund)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금이다. ③ 기업기금(corporate fund)은 특정기업 또는 기업집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금이다. ④ 소규모기금(small fund)은 5인 미만의 구성원을 갖는 폐쇄적인 기금으로서 대부분 자기관리형 기금(SMSF: Self-managed super fund)으로 운용된다.⁸³⁾ ⑤ 소매기금(retail fund)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구성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기금이다. 직역별 기금인 경우에도 폐쇄성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바, 일례로서 산업기금이 일반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⁸⁴⁾ 또한 어떤 기금을 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82) 한편 Dean Paatsch & Graham Smith, *The Regulation of Australian Superannuation: An Industrial Relations Law Perspective*, 5 *Corp. & Bus.L.J.* 131, 133(1992)에서는 superannuation을 공적분야기금(public sector superannuation) 사적 또는 자영업 기금(private sector/single employer sponsored superannuation), 국가기금(national superannuation), 산업기금(industry or award superannuation), 개인기금(personal superannua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83) 자기관리형 기금의 가입자는 전원이 수탁자가 되며 슈퍼에누에이션의 혜택을 누리는 대신 수탁자로서의 무거운 임무를 부담하게 된다.

84) Jeremy Cooper, *Super System Review Final Report*, 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Superannuation and Corporate Law* (2010), p.69. (available at <http://www.treasury.gov.au/ConsultationsandReviews/Reviews/2009/Super-System-Review/Publications/Final-Report>)

종래에는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으나, 2005. 7. 1. 부터는 근로자 내지 노조에 그 권한이 부여되었다.⁸⁵⁾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근로자가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면 이른바 ‘MySuper Fund’가 디폴트 기금으로 제공되게 되었다.⁸⁶⁾ 위 기금들을 세분하면 각기 defined benefit fund와 accumulation fund로 재분류할 수 있다.⁸⁷⁾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자는 DB형, 후자는 DC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적립금 기준으로 소규모기금과 소매기금이 32%, 27.9%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 현황⁸⁸⁾

Sector	Entities	Assets(\$B)	Market Share of Assets
Corporate	171	60.9	4.8%
Industry	65	226.6	18.0%
Public sector	39	177.4	14.1%
Retail	154	351.2	27.9%
Small funds	426,566	401.8	32.0%
Balance of life office statutory funds	n/a	39.6	3.1%
Total	426,995	1,257.5	100.0

원래 2층으로서의 강제퇴직연금은 사용자의 강제출연을 전제로 한다.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슈퍼에뉴에이션에 가입해야 하며 적어도 근로자 보수의 9.5%를 근로자 명의의 슈퍼에뉴에이션 계좌에 출연하여야

85) John Berrill, The Law Handbook(13th Ed): CH 40 Superannuation, Thompson Reuters (2014), p.1249.

86) John Berrill, The Law Handbook(13th Ed): CH 40 Superannuation, Thompson Reuters (2014), p.1249.

87) Dean Paatsch & Graham Smith, The Regulation of Australian Superannuation: An Industrial Relations Law Perspective, 5 Corp. & Bus.L.J. 131, 134(1992). 그밖에 Hybrid 형태로 가능하다. Jeremy Cooper, Super System Review Final Report, 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Superannuation and Corporate Law (2010), p.70.

88) Jeremy Cooper, Super System Review Final Report, 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Superannuation and Corporate Law (2010), p.70. (available at <http://www.treasury.gov.au/ConsultationsandReviews/Reviews/2009/Super-System-Review/Publications/Final-Report>)

한다.⁸⁹⁾ 이러한 강제적 성격을 들어서 슈퍼에뉴에이션 “보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슈퍼에뉴에이션은 이러한 사용자의 출연금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슈퍼에뉴에이션은 강제적(compulsory)인 것과 자발적인 것(voluntary)이 혼재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도 슈퍼에뉴에이션의 기금을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인 경우라도 위 사용자 출연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급여로 받는 경우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급여 중 일부를 슈퍼에뉴에이션으로 추가출연한다면 그 출연금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출연할 유인이 크다.⁹⁰⁾ 나아가 슈퍼에뉴에이션 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하여도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에는 한도(cap)가 있다. 즉 아직 과세되지 않은 출연금인 경우(before tax) 1인당 1년에 AUD 25,000가 한도이고, 이미 과세된 출연금인 경우(after tax) 1인당 평생 AUD 500,000가 한도이다.⁹¹⁾

슈퍼에뉴에이션에 투자된 재원은 원칙적으로 은퇴시까지 인출할 수 없다. 다만 한 사람이 수개의 기금에 가입하거나 하나의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나아가 수개의 기금에 개설된 계좌를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의 근로자가 기존의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새로운 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요청하면 된다.⁹²⁾

89) Moneysmart, Super decisions: Your savings, Your choices, Your future (available at <https://www.moneysmart.gov.au/media/555121/super-decisions.pdf>), p.4에 의하면 향후 12%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90) 호주 세법상 AUD 37,0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32.5%, AUD 80,0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37%, AUD 180,0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Marcia Keegan, Gabriela D’Souza and Rebecca Cassells, Superannuation Adequacy with Voluntary Contributions: a Comparison of Living Standards, p.6. (available at http://www.murdoch.edu.au/School-of-Business-and-Governance/_document/Australian-Conference-of-Economists/Superannuation-adequacy-with-voluntary-contributions_A-comparison-of-living-standards.pdf).

91) Australian Treasury, Budget 2016: Superannuation Fact Sheets(2016), p.1 (available at http://www.budget.gov.au/2016-17/content/glossies/tax_super/downloads/FS-Super/SFS-Combined.pdf).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전인 출연금에 대하여는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이미 과세된 출연금(상속 등)에 대하여는 다시 과세하지는 않는다.

92) Moneysmart, Super decisions: Your savings, Your choices, Your future (available at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은 이른바 기금형을 전제로 한다. 회사 외부에 설정된 기금을 통하여 자산이 운용된다. 슈퍼에뉴에이션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강제성 출연금 이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급여의 일부 등을 출연하는 자발적 출연금을 포괄한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2층의 강제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자발적 출연금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에 연간한도가 있으므로 개인연금의 존재의의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슈퍼에뉴에이션으로 노후 연금이 통합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

미국의 노후소득 보장체제도 연금제도도 3개 층으로 구성된다. 1층인 공적연금(Social Security)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 등을 포괄하는 공적 부조의 성격이고, 2층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이고, 3층이 개인의 판단에 따른 추가 재원인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이다. 특히 2층의 퇴직연금제도인 이른바 401(k)와 3층의 개인퇴직계좌는 사적 연금을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1) 401(k)

401(k) 제도는 1978년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1조 (k)항에 DC형 퇴직연금에 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위 조항 이름에 따라 호칭되기에 이르렀다. 401(k)에는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401(k), Safe Harbor 401(k)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⁹³⁾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401(k)와 Roth 401(k)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통적인 401(k) 하에서 근로자는 연간 18,000달러 한도에서(50세 이상인 경우 24,000달러, 2015년 기준. 이하 같음) 사용자가 별도 신탁으로 설

<https://www.moneysmart.gov.au/media/555121/super-decisions.pdf>, p.21.

93) 유형에 관하여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sponsor/401k-plan-overview> 참조.

정한 401(k) 계정에 출연한 다음, 59.5세에 이르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401(k)는 해당 근로자가 재직하는 사용자가 설정하는바, 사용자는 그 재량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25%까지 이른바 매칭 출연(matching contribution)을 할 수 있다.⁹⁴⁾ 401(k)의 특징은 세전소득(pre tax income)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과세이연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중 근로자가 신청한 401(k) 출연예정분을 원천징수 등 없이 곧바로 신탁계좌로 보낸다. 나중에 59.5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시점에 위 출연부 및 운용소득에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전통적 401(k)에 대비되는 것이 Roth 401(k)이다. 내국세법 제 402조A에 근거한 것으로서 2006. 1. 1. 도입되었다. 후술하는 Roth IRA를 참고로 한 것으로서, 이른바 up front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다. 즉 처음에 출연한 당시부터 이미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퇴직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Roth 401(k)로 지정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한다.⁹⁵⁾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근로자들은 두 가지를 함께 가입할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도 연간 한도액 18,000달러는 전통적 401(k)와 Roth 401(k)를 합산하여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은퇴시의 적용세율이 현재의 그것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전통적 401(k)를, 반대인 경우 Roth 401(k)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401(k) 제도에 대하여는 대체로 투자성과가 높지 않고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IRA

IRA는 1974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본디 은퇴

94)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연하는 금액의 합계는 근로자의 연봉 또는 연간 53,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95) 다만 많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Roth 401(k)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행정비용 등 증가를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후 기업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1년 일반 근로소득자 등에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⁹⁶⁾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SIMPLE IRA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전통적 IRA와 Roth IR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통적 IRA인 경우 가입자는 연간 5,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500달러. 2015년 기준. 이하 같음) 한도에서 IRA 계좌에 출연된 금액에 관하여는 출연시에 공제혜택을 누린다. 위 전통적 401(k)와 마찬가지로 출연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구조이지만, 연간 한도액은 훨씬 적다. 전통적 IRA 가입자는 59.5세 이후에 위 출연금을 수급할 때에 과세된다. 그 이전에라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401(k)와 차이점이 있다. 다만 IRA 가입자가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일종의 벌칙금을 부과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다.

Roth IRA는 William V. Roth Jr.가 제출한 Taxpayer Relief Act of 1997에 의하여 1998년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의 명칭은 위 제안자의 이름에 따른 것이다. Roth IRA는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출연금으로 운용되는바, 그 이후에는 별도의 과세가 없다.⁹⁷⁾ 따라서 59.5세에 이르러 인출할 때에는 그 출연금 원본 및 운용수익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다만 5년 이상은 가입한 상태여야 함). 가입자는 Roth IRA와 전통적 IRA에 동시에 가입할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간 5,5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6,500달러) 한도에서만 세제혜택이 인정된다.

(3) 계약이전(Rollover)⁹⁸⁾

먼저 동일한 유형 내부에서의 계약이전을 살펴본다. 이는 전통적 401(k)에서 전통적 401(k)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직에 따른 구 직장과 신 직장의 프로그램 사이의 이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계약이전은 당연히 허용된다. 동일한 유형 내부의 계약이

96)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Publication 590-A (2016. 1. 5).

97)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roth-iras>

98) “계약이전”이라는 용어에 관하여는 앞의 각주 24 참조.

전 중 IRA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잦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1년 1회 규칙(one-rollover-per-year rule)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통적 IRA 계좌를 다른 전통적 IRA 계좌로 계약이전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1년 1회에 한한다. 다만 아래에서 논하는 서로 다른 유형(전통적 IRA에서 Roth IRA에의 계약이전 포함)간 계약이전에는 이러한 회수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⁹⁹⁾

다음으로 다른 유형 사이의 계약이전을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401(k) 계좌와 IRA 계좌는 별도의 범리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통합운영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계약이전하는 것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계약이전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즉 ① 어떤 계좌의 해지환급금을 받아서 이를 곧바로 이전대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direct rollover), ② 기존 계좌의 수탁자에서 신계좌의 수탁자로 자금이 이전되는 방식(trustee-to-trustee transfer), ③ 해지환급금을 보관하다가 60일 이내에 계약이전신청을 하는 방식(60 day rollover)이 그것이다.¹⁰⁰⁾

먼저 401(k)의 경우, 전통적 401(k)에서 Roth 401(k)로 계약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로는 불가능하다. 한편 IRA의 경우에도 전통적 IRA에서 Roth IRA로 계약이전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불가능하다. Roth 401(k) 또는 Roth IRA는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이후 과세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통적 계좌로 넘길 때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401(k)와 IRA의 사이의 계약이전에 관하여, 일단 Roth IRA로 설정된 금액인 경우 이를 401(k) 또는 Roth 401(k)로 이전할 수 없다.¹⁰¹⁾ 반면 전통 IRA인 경우 401(k) 또는 Roth 401(k)로 이전 가능하다. 한편 전통 401(k) 또는 Roth 401(k)에 들어 있는 금액은 IRA 쪽으로 계약이전할 수 있다.

99)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ollovers-of-retirement-plan-and-ira-distributions>:

100)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ollovers-of-retirement-plan-and-ira-distributions>

101)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Publication 590-A (2016. 1. 5), p.47.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계약이전의 가능성¹⁰²⁾

		신규가입 계좌 (Roll to)			
		Roth 401(k)	전통 401(k)	Roth IRA	전통 IRA
기존 계좌 (Roll from)	Roth 401(k)		x	o	o
	전통 401(k)	o		o	o
	Roth IRA	x	x		x
	전통 IRA	o	o	o	

IRA는 기본적으로 직장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직장에서의 기업연금 성격인 401(k)로 계약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혼하지 않다. 법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해당 직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요건 및 과세특례한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401(k)와 Roth 401(k)의 운용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같은 계약이전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401(k)에서 IRA에의 계약이전은 특히 이직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원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그가 보유하던 401(k)의 처리에 관하여는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기존 401(k)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로 신직장의 퇴직연금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방안이고, 마지막으로 IRA로 계약이전하는 방안이다. 위 마지막 방안은 이직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¹⁰³⁾

또하나 유의할 부분은 Roth IRA의 폐쇄성이다. 일단 Roth IRA로 납입되면, 그 금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운용되고 이를 다른 계좌로 계약이전할 수 없다.

102)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Publication 590-A (2016. 1. 5), p.22의 표를 참조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103) Marc Bautis, Top Reasons to Rollover Your IRA, (available at <http://bautisfinancial.com/wp-content/uploads/2015/02/401kRollover.pdf>)

VI. 제도적 대안

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사적연금 중 2층의 기업연금과 3층의 자발적 개인연금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2층의 기업연금과 3층의 자발적 개인연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일반적 추세이다. 연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연계성 강화가 실질적인 가입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하여도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노후자금의 통합은 예금자보호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될 여지가 있다. 정부가 DC, IRP의 보호한도를 높일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¹⁰⁴⁾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압류금지자산인 퇴직연금과 달리¹⁰⁵⁾ 개인연금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바, 후자도 압류금지자산으로 규정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¹⁰⁶⁾

구체적인 연계의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IRP와 연금저축간의 계약이전은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퇴직연금 중 DB, DC와 연금저축간의 계약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우리나라의 DB, DC가 이른바 ‘계약형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즉 근퇴법상 DB, DC는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와 자산관리기관 등 사이의 계약관계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반면 호주, 미국 등의 경우 출연자금은 ‘신탁형 구조’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가 유리한 구조이다. 실제로 고용복지부는 2016. 8. 31. 신탁구조에 의한 기금형 퇴직

104) 이재우, 앞의 글, 13쪽 등.

105) 근퇴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10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위는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퇴직-개인연금 환승시작: 53만 계좌 14조원의 대이동, 2016. 6. 1. 26쪽.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¹⁰⁷⁾

이하에서는 제도적 대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는 신탁구조에 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의 쟁점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문제이다. 근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 제도 변화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둘러싸고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다.¹⁰⁸⁾ 그러나 호주 등 외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장래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개인연금과의 연계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더 장기적, 거시적인 대안으로서 통합개인연금계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향후 사적연금의 나아갈 방향으로서 2층과 3층의 연금을 아우르는 통합계좌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그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금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

(1) 기금형 퇴직연금과 계약형 퇴직연금의 비교

기존 근퇴법상 퇴직연금의 주종을 이루는 DB, DC는 이른바 계약형에 의한다. 즉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주도 하에 운영된다. 원래 근퇴법은 운용관리 회사(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전달 등 담당¹⁰⁹⁾)와 자산관리회사(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회사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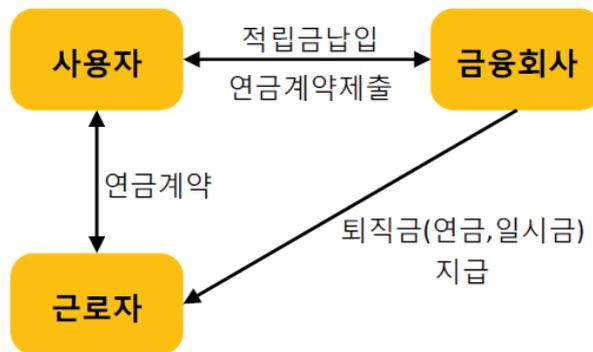
107) 고용노동부, 2016. 8. 31.자 보도자료,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 강화-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금형제도 도입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108) 지금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보험업계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지연, 보험업계도 반대”, The Bell, 2017. 2. 20.자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702160100034280002093).

109) 근퇴법 제28조 제1항 참조

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지급 등 담당¹¹⁰⁾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근퇴법에서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통칭하여 퇴직연금사업자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13호), 하나의 금융회사가 위 두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번들링(bundling)이라고 하여 하나의 금융회사가 위 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계약에 터잡고 있으므로 가입자(근로자)의 관여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위 계약형의 경우 제도 운영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는 반면, (i)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는 점, (ii)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간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그 부작용은 사용자 및 근로자의 묵인 내지 무관심 하에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주로 자사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¹¹¹⁾

[그림 3] 계약형(기존) 퇴직연금의 구조¹¹²⁾



최근 도입이 검토되는 기금형은 기존 계약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형 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별도의 기금(수탁법인)에 퇴직

110) 근퇴법 제29조 제1항 참조.

111) 김지희, “기금형 지배구조의 특성과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퇴직연금뉴스」 vol. 62,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3), 3쪽.

112) 황원경,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효과”, 「KB지식비타민」 15-60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8. 15), 2쪽.

연금을 맡긴다. 사용자와 수탁법인간의 법률관계는 통상 신탁으로 구성된다. 이 때 근로자는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되고 수익권의 내용으로서 연금 수령권을 갖게 된다. 수탁법인은 출연금을 별도의 법인에 보관하고(자산보관 금융회사), 구체적인 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든지 또는 외부에 위탁(자산운용 금융회사)하게 된다. DB이든 DC이든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적 주도 하에 자금이 운용되는 기존 체제와 달리 기금형인 경우 수탁법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DB형인 경우 수탁법인 이사회의 결정이 곧 사용자의 운용지시로 인정될 것이고, DC형인 경우 수탁법인은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을 통해 금융회사의 이해상충행위를 견제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근로자의 참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수탁법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용자를 통괄하는 수탁법인이 탄생할 수 있고 근로자 퇴사 이후에도 계속 기존의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계약형에 대비한 단점으로는 수탁법인이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전체적인 퇴직연금 제도운용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4]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조¹¹³⁾



113) 황원경, 위의 글, 2쪽.

생각건대 기금형과 계약형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계약형에서 금융회사를 견제할 장치를 부여하고, 기금을 사용자, 금융회사로부터 절연되는 별도 자금으로 관리한다면 굳이 기금형 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지시권과 수급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금융회사를 수월하게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금형이 더 나은 제도로 생각된다. 이는 기금형에 따른 일부 운용비용 추가를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계약형은 퇴직연금의 도입 초기에 운영의 간이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관점, 즉 가입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연계하여 관리하기 용이한가의 점에서 보더라도 기금형이 우월하다. 우리 퇴직연금 법제는 장기적으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주요쟁점

1) 계약형과 기금형의 병용 여부

고용노동부가 2016. 8. 31. 발표한 입법예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새로운 기금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기금형으로의 변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제도변경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기금형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미국, 호주 등 신탁구조에 의한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계약형이라는 별도의 구조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현행법 하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 의하다가 기금형으로 변경한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근로법 제4조 제3항, 입법예고안 제31조의6 제2항).¹¹⁴⁾ 계약형 내부 또는 기금

형 내부에서 그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근퇴법 제4조 제4항, 입법예고안 제31조의6 제1항).

2) 기금형 제도의 법적 구성

기금형 제도의 핵심 요소는 사용자와 구분되는 독립법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독립법인의 형태를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하는 방안도 있으나 입법예고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을 통하여 법적 형태를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제31조의3 제1항).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하는 경우 그 주주, 사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것임을 고려한 것인바, 비영리재단법인은 무난한 선택지로 생각된다.

독립법인과 사용자가 맺는 계약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계약형 연금제도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맺는바(근퇴법 제28조, 제29조) 이는 일반적인 계약법리에 의해 의율된다. 반면 앞서 살펴본 미국 및 호주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별도의 신탁을 설정하는 구조이다. 가입자의 수급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기금의 독립적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도 기금형 제도의 독립법인과 사용자간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위 독립법인을 신탁법인으로 호칭하고 있다(근퇴법 제2조 제12호). 기금형을 새로이 도입하는 취지에 걸맞는 조항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독립법인(신탁법인)의 구체적인 자산운용 및 관리형태이다. 가장 단순한 것은 신탁법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면서 운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기존 계약형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신탁법인의 자산운용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법인은 일종의 vehicle

114) 구체적으로 근퇴법 제4조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로서 사용자, 근로자 및 중립적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운용이 아니라 큰 방향의 설정 및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자산관리업무’는 반드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방식으로 외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의10 제2항). 한편 ‘운용관리업무’는 수탁법인이 직접 담당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하는 경우에 위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의10 제1, 3항). 위 두가지 문제점을 의식한 타당한 조항으로 보인다.

3) 수탁법인의 운영

수탁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탁법인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자와 근로자 대표가 선임한 자가 동수인 가운데, 이른바 전문가 이사가 결론을 좌우하기 쉬운 구조이다. 전문가 이사는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다(제31조의9). 수탁법인의 설립 및 운용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제31조의11 제1항), 수탁법인은 별도로 차입,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31조의11 제2항).

기금형 퇴직연금은 DB형, DC형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활용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탁법인 설립 및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수탁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충돌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퇴직연금의 운용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여길 수 있다.

(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시의 개인연금 연계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이전은 2016. 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면 허용되었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 DC, DB는 제외하고 IRP에 한하여, 그것도 퇴직 또는 55세 이후에만 계

약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폭은 크지 않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DB형인 경우, 기금형 DB가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금저축과의 연계운용한다든지 연금저축으로의 계약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기 어렵다. DB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운영결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연금저축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401(k),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도 기본적으로 DC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DB가 주종인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 DC형인 경우, 기금형 DC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굳이 DC와 IRP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이 운용되는 점,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주체에 의해 관리, 운용되는 점, 투자대상이 DB에 비하여 제한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유사점이 많다. 차이점으로서 DC는 그 재원이 사용자에게 의해 충당하고 IRP는 근로자에게 의해 납입된다는 점인데, 어차피 불입된 이후 전체가 근로자의 몫으로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므로 위 자원 문제는 본질적이지 않다. 또한 과세특례 한도를 통합하여 적용한다면 과세상 차이거래(arbitrage)도 발생하지 않는다.¹¹⁵⁾ 기금형 DC의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는 DC와 IRP간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이라도 DC, IRP와 연금저축간의 계약이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노후자산 운용을 보장하고, 연금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듯 DC, IRP와 연금저축간의 연계 운영 또는 계약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외에 제도적으로 몇 가지 검토, 개선될 사항이 있다. 첫째로 과세특례의 범위이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세제상 특례에는 차이점이 있다. 연금가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운영수익률과 함께 세부담이 연금상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

11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2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통산하여 한도를 결정한다.

요한 요소가 된다. 어차피 DC는 DB와 유사한 과세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RP가 DC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둘째로 DC와 IRP의 일원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형 제도 하에서 더 이상 DC와 IRP를 별도의 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세 번째로 계약이전의 간이화 및 남용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앞서 언급 저축 내부의 계좌이체에서 보았듯이 계약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55세 이후로 한정되어 있는 IRP와 연금 저축간의 계약이전을 55세 이전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위 계약이전은 2016. 2. 27. 소득세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는바, 55세 요건은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과도적 성격이 있다. 점차로 위 연령 제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자산운용 및 계약이전 남용 방지라는 차원에서 그 횟수 및 주기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연계운용을 장려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입자들로 하여금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바 지나치게 잦은 변경은 자산운용자 뿐 아니라 가입자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자체에 관한 쟁점이다. 입법예고안은 계약형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기금형 제도의 효용을 높이는 기존 제안들을¹¹⁶⁾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위 입법예고안이 개선될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① 기금형 퇴직연금 중 DC형과 DB형은 운영원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DB형의 경우 그 운영성과가 나쁘더라도 사용자는 이미 정해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미 정해진 출연금만을 기금에 보내면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DC형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수탁법인의 업무, 의사결정, 나아가 IRP와의 연계가능성 등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이 점을 고려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의 규율법리도

116) 이태호/이중기/권순원/김병덕,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 고용노동부/한국채권연구원 용역보고서 (2015); 이영섭/이준행/이철희, 고령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4) 등 참조.

DC형과 DB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② 입법예고안은 DC형에 한정하여 적립금 직접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10 제1항 제1호). 이렇듯 수탁법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은 스위스 퇴직연금을 참고한 것으로서,¹¹⁷⁾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자산운용을 무조건 외부위탁할 경우에 수탁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무건전성 및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자산운용업무가 허용될 것이지만, 이러한 수탁법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기관의 이중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게 되어 과도한 규제 또는 과소한 규제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③ 기금형 퇴직연금(DC)과 IRP, 개인연금과의 연계 내지 통합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수탁법인의 의사결정이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입법예고안의 수탁법인의 구성은 이러한 점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 입법예고안 제31조의9에 따르면 수탁법인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자와 근로자 대표가 선임한 자가 동수인 가운데, 이른바 전문가 이사가 결론을 좌우하기 쉬운 구조이다. 전문가 이사는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하므로 결국 사용자가 수탁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DC형 기금인 경우 사용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④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복수의 사용자의 기금을 하나로 모아서 수탁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규모의 경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31조의16).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위 DC형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둘 필요가 있다. 호주, 미국에서 보듯이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 및 이동의 자유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규모의 경제는 복수 사용자 기금의 설정 뿐 아니라 가입자의

117) 스위스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서 성주호 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행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2014), 31쪽 이하 참조.

선택권을 강화함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DC, IRP 뿐 아니라 연금저축까지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세제상 소위 “TEE”¹¹⁸⁾ 구조에 의하는 연금보험과 달리 DC, IRP, 연금저축은 “EET”¹¹⁹⁾에 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층 시스템은 출연의 주체에 따라 출연자가 기업인 경우 2층, 개인인 경우 3층이라는 전제에 의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세제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DC, IRP, 연금저축을 포괄하는 형태로 2층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통합이 실행되는 경우 연금자산 운용 규제는 가장 강도가 약한 연금저축의 그것을 따르게 될 것인바, 이렇듯 일률적으로 완화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규제 강도가 다른 두 개의 선택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한편 호주의 경우 같은 슈퍼에뉴에이션 중에서도 출연금이 과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한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401(k) 또는 IRA 내에서도 전통형과 Roth형 등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DC, IRP, 연금저축의 통합은 관리비용 절감, 이해의 용이성 등에서 강점이 있으나, (세부 카테고리의 존속으로 인해) 실체에는 큰 변동이 없으면서 단지 재분류하는 것에 그치게 되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2. 통합연금계좌의 가능성

(1) 최근의 개인연금계좌 논의와 그 한계

학계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종합재산신탁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¹²⁰⁾ 여기에서는 연금성 자산에 한하여 통합계좌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18) TEE란 ① 처음 납입을 하는 시점에만 과세하고(Tax), 그 이후의 ② 운용수익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고(Exempt), ③ 투자금 회수의 경우에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Exempt) 형태의 세제를 가리킨다.

119) 이는 처음 납입 및 운용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금 회수시에만 세금을 내는 것을 뜻한다.

120) 정순섭, 송홍선, 진익,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용역보고서(2013), 23쪽 이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인연금법 제정방안(2016. 5.)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저축을 아우르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할 것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종합관리의 주된 대상은 연금저축, 즉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지만 나아가 연금보험, IRP의 운용현황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²¹⁾

다만 개인연금계좌는 각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는 가상관리계좌라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개별연금상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이를 하나의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연금자산의 통합운용 등과는 거리가 있고, 이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얻기는 어렵다. 가입자들이 보유 연금자산 현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기능이 제한된다고 하겠다.

(2) 향후의 개선방안

통합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진일보한 것은 DC,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것이다(DB는 사용자의 책임 하에 운용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함). 다른 한편 가장 느슨한 형태는 각 계좌를 별도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가상계좌로서 통합관리계좌를 두는 방식일 것이다.

전체 통합방식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법리와 세제가 다른 이상 오히려 가입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단지 통합관리계좌만을 두는 것은 통합적 운영의 실효를 달하기 어렵다. 생각건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금형 DC와 IRP만을 통합하고 나머지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독자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다. 만약 가입자가 IRP 또는 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의 하나의 전망이 밝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전환비용 없이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부여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IRP, 연금저축 등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금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121) 금융위, 2016. 5. 31.자 보도자료,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2쪽.

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 체제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개선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통합이다. 이 논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이후 IRP와 DC형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음을 논거로 한다. 장기적으로 계약형 퇴직연금이 사라지고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을 DC형과 DB형으로 구분하면 될 것이다.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계속 DC형 신탁을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제에 의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DC를 통산하여 설정되므로 위 DC와 IRP의 통합이 세제상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DC형과 연금저축, 연금보험간의 자유로운 계약이전이다. 현재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이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분야인 경우에도 허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래 기존 계좌에서의 인출은 과세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위 연금성 계좌 사이의 이전인 경우 기존 계좌의 과세 특례를 이전 이후에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입자는 시장 상황 또는 개인의 자산상황에 따라 가입상품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유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상호 전환은 2016. 2.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로소 IRP와 연금저축 간 계약이전 형태로 허용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전은 가입자가 퇴직 또는 55세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과 달리 호주의 슈퍼에누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강제성 출연금 이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급여 일부를 출연하는 자발적 출연금을 포괄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층의 강제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효과를 갖게 된

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계약이전과 유사한 Rollover를 통하여 가입자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를 위해 DC형과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자유로운 계약이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DC와 IRP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수, 김종훈, 허재준, 송홍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4.
- 김종훈, 고령화시대의 연금자산 운용, KDI-금융투자협회 공동심포지엄: 고령화/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2014. 10. 21.
- 김지희, “기금형 지배구조의 특성과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퇴직연금뉴스」 vol. 62,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3. (<http://pension.truefriend.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박근후, 박지순, 전해향, 정영훈, 퇴직연금 단일화 법률적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4.
- 박희진, 국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퇴직연금센터 퇴직연금 정책 연구보고서, 2015.
- 성주호 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행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2014.
- 안홍덕,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변화 필요: 확정급여형(DB) 중심으로”, 「퇴직연금뉴스」 vol. 77,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5 (<http://pension.truefriend.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석호/임형준,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 2013.
- 이영섭/이준행/이철희, 고령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4.
- 이재우, 퇴직연금 시장 전망 - 누가 웃는가, 한국신용평가 Special Report 2015. 2. (<https://www.kisrating.com/research/specialreport.asp>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준행,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움 발표자료, 2014. 5. 30. (http://www.sirfe.com/index.php?mid=PolicyConference&search_tar

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7%B0%EA%B8%88&document_srl=2860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진섭, “특정금전신탁의 폭넓은 활용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운용 재량을 부여해야”, 「퇴직연금뉴스」 vol. 43,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11 (<http://pension.truefriend.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태호, 이중기, 권순원, 김병덕,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 고용노동부/한국채권연구원 용역보고서, 2015.

정순섭, 송홍선, 진익,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용역보고서, 2013.

황원경,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효과”, 「KB지식비타민」 15-60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8. 15.

퇴직연금 연구센터,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고용복지부/근로복지공단, 2016.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고용복지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현대경제연구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성장 전망과 영향”, 「연금시장리뷰」 제68호, 2012. 9. 14.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와 IRP, 무엇이 좋을까?”, 「연금저축 컨설팅 가이드」 vol. 18 2016. 7.

관계부처 합동, 2015. 12. 21.자 보도자료: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4. 8. 27.자 보도자료: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금융위/금감원, 2015. 4. 21. 보도자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금융위, 2016. 7. 13.자 보도자료,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등이 면제됩니다.

(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 S0030&no=31272에서 다운로드가능)

- 금융위, 2016. 5. 31.자 보도자료,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 개인연금활성화법
- 고용노동부, 2016. 8. 31.자 보도자료,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강화-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금형제도 도입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금감원, 2014. 2. 16.자 보도자료,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 금감원 2011. 11. 14.자 보도자료,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금감원, 2001. 2. 26.자 보도자료,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실시
-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주요특징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금감원, 세제 혜택을 위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 방법 안내 (<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금감원, 연금저축 납입시 꼭 알아야 할 6가지(2014. 11. 기준)(<http://pension.f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John Berrill, The Law Handbook(13th Ed): CH 40 Superannuation, Thompson Reuters, 2014
- Jeremy Cooper, Super System Review Final Report, 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Superannuation and Corporate Law, 2010 (available at <http://www.treasury.gov.au/ConsultationsandReviews/Reviews/2009/Super-System-Review/Publications/Final-Report>)
- Marcia Keegan, Gabriela D'Souza and Rebecca Cassells, Superannuation Adequacy with Voluntary Contributions: a Comparison of Living Standards, 2016 (available at

http://www.murdoch.edu.au/School-of-Business-and-Governance/_document/Australian-Conference-of-Economists/Superannuation-adequacy-with-voluntary-contributions_A-comparison-of-living-standards.pdf)

Dean Paatsch & Graham Smith, The Regulation of Australian Superannuation: An Industrial Relations Law Perspective, 5 Corp. & Bus.L.J. 131 (1992)

Moneysmart, Super decisions: Your savings, Your choices, Your future, 2016 (available at <https://www.moneysmart.gov.au/media/555121/super-decisions.pdf>)

Australian Treasury, Budget 2016: Superannuation Fact Sheets, 2016 (available at http://www.budget.gov.au/2016-17/content/glossies/tax_super/downloads/FS-Super/SFS-Combined.pdf).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Publication 590-A, 2016. 1. 5.

Marc Bautis, Top Reasons to Rollover Your IRA, (available at <http://bautisfinancial.com/wp-content/uploads/2015/02/401kRollover.pdf>)

<http://www.moel.go.kr/pension/index.do> (고용복지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

<http://100lifeplan.fss.or.kr>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http://strongersuper.treasury.gov.au/content/Content.aspx?doc=home.htm>(호주 슈퍼에뉴에이션)

<https://www.irs.gov> (미국 국세청)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에 의한다. 이 글은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이외의 2, 3층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자원을 사용자의 자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규제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3층의 개인연금은 그것이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세제유인 및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기존 제도를 살펴볼 때, 퇴직연금 내부에서의 상호 전환은 법리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흔하지 않다. 개인연금 내부에서 예컨대 연금저축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바, 특히 2015. 4. 이후에는 신규 가입 금융기관을 한번만 방문하여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바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상호 전환은 그동안 금지되었으나, 2016. 2.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이전이 허용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전은 가입자가 퇴직 또는 55세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금액 전체에 관하여 가능한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의 슈퍼에누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강제성 출연금 이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급여 일부를 출연하는 자발적 출연금을 포괄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층의 강제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 미국의 경우 2층 퇴직연금제도는 401(k)에 의하고 3층의 개인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좌(IRA)에 의한다. 401(k)와 개인퇴직계좌는 세금납부 방식에 따라 각기 전통형과 Roth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기 다른 법령 및 역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그 자체를 통합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약이전과 유사한 Rollover를 통하

여 가입자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가급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DC형과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자유로운 계약이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복지부는 조만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DC와 IRP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이전, 슈퍼에뉴에이션(호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미국), 고령화 사회, 통합연금계좌

Redesigning the Privat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Case for Associating Individual Pensions and Retirement Pensions

RHO, Hyeok-Joon*

As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afety net for aging population is composed of public pension fund (i.e. “National Pension Fund”) and private pension fund. This paper focuses upon private pension fund because National Pension Fund is supposed to operate under unique logic reflecting its public feature. The private pension fund in Korea comprises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hile the retirement pension is basically associated with a person’s employment and of mandatory nature, the individual pension is based upon a person’s choice for further savings. The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however, have the same goal in their cores: to provide a person with financial support when economic activities get no more active. This paper starts from the idea that accumulated assets management will benefit the investors according to the economy of scale theorem and the combined management of both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ould contribute to the wealth maximization of pensioners.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le combination of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the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current system for associating two pensions (Chapter II to IV). The types of retirement pension include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and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On the other hands, individual pension may be classified as non-taxable individual pension and taxable individual pension, the former being the typical one. The current legislations in Korea enables the rollover among various retirement pension schemes or among various individual pension schemes. When it comes to the rollover between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individual pension scheme’, however, only

* Pr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limited type transfers are allowed: only if a person reach the age of 55, one may apply for the rollover; and a partial rollover is not possible.

Chapter V of the paper further reviews foreign models. Under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the pension fund include both compulsory contribution by employers and voluntary contribution by individuals. Actually an individual may enjoy the economy of scale from combined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 the rollovers between 401(k) (i.e. U.S. style retirement pension) and IRA (i.e. U.S. style individual pension) are broadly plausible, while detailed regulation according to conventional or roth scheme might often be triggered.

In Chapter VI, the paper suggests the way to achieve efficiency in private pension management. First the retirement pension structure should be reformed so that the pension property should not be influenced by the employer's direction. Secondly, the DC and IRP should be merged into one scheme.

Key Words :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Defined Benefit pension,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Rollover, Superannuation, ERISA, Aging Society, consolidated pension account